

(주)반도건설

Http://www.bando.co.kr

135-91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번지 허버허바빌딩 11.12층
주택사업팀

Tel : 02-3011-2700 Fax : 02-3011-2727 E-Mail :



문서번호 : 반 도 제 2016 - 호

시행일자 : 2016. 05. 12

수 신 :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

발 신 : (주)반도건설

제 목 : “동탄2 신도시 A-80블록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.0(1단지)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의 건”

1.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A-80블록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공급 대상자 배정을 2016년05월23일까지 요청하오니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사업개요

- 위 치 :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A-80블록
- 세대수 : 총 공급 1,241세대 중 일반특별공급 122세대
- 견본주택 오픈일 : 2016년 05월 20일 (예정)
- 특별공급 신청일 : 2016년 05월 24일 (예정)

※ 상기 세대수 및 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

나. 업무 협조 사항

- 특별공급 대상자 통보일 : 2016년 05월 23일(특별공급 접수 전일)
- 대상자 배정 회신처
 - 1) 우편 : (우445-160) 경기도 화성시 능동 529-1
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10.0(1단지) 견본주택
 - 2) 담당자 : 김재광 팀장 (TEL. 031-221-2221)
 - 3) e-mail : ranger3263@naver.com

※ 불 임 :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- 1부. 끝.

주 식 회 사 반 도 건 설

대 표 이 사 유 대 식



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

- 공급위치 : 경기도 화성시 동탄2 택지개발지구 A-80블록
- 공급규모 및 내역 : 아파트 지하 3층, 지상 20층, 총 15개동, 아파트 1,241세대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
- 기관추천 특별공급 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: 10% 이내)

● 신청자격

- 대상자 :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(국가보훈대상자, 장애인, 이주대책 대상자, 중소기업근로자, 대한민국체육유공자, 공무원 또는 군인)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 현재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

※ 중소기업근로자, 군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① 청약예금 : 85㎡이하 또는 102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된 자
 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
 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 금액이 85㎡이하 또는 102㎡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(단, 신청 전에 가입은 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 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)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(다자녀 / 노부모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포함)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불가 (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. 단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 제1호 제외)

- 대상세대

(단위: ㎡/ 세대)

구 분(전용면적)	59A	59B	74	84	계
기관추천 특별공급	60	10	38	14	122

※ 상기 세대수는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.

● 당첨자 선정방법

-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 또는 해당기관의 확인서(추천서)를 발급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여야 함.[미신청시 당첨자선정(동·호배정) 및 계약불가]
-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.
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 공급신청(특별 및 일반공급)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 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단,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,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(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)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.